|  |  |  |
| --- | --- | --- |
|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리조례**국무원령 제626호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리조례>는 2012년 10월 10일 국무원 제219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한바 공포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2012년 10월 22일**제1조** 결함 자동차제품의 리콜을 규범화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 생산 및 판매된 자동차와 자동차 트레일러(이하 "자동차제품")의 리콜 및 그 감독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결함은 설계, 제조, 표지 등의 원인으로 초래된 동일한 차(次)수, 모델 또는 유형의 자동차제품 가운데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또는 기타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합리적인 위험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칭하는 리콜은 자동차제품 생산자가 판매한 자동자 제품에 대해 결함제거 조치를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4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전국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의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유관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련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업무 수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제품품질 감독부문, 수출입상품검험기구에게 위탁하여 결함 자동차제품의 리콜 감독관리 가운데 일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의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기술기구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 규정에 따라 결함 자동차제품을 리콜하는 세부적인 기술업무를 맡는다.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자동차제품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신고접수 전화번호, e-mail, 우편주소를 공포한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집계를 수집 및 결함 자동차제품의 유관 정보를 분석, 처리해야 한다. 제품품질 감독부문, 자동차제품주관부문, 상무주관부문, 해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 교통운수주관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등 유관 부문은 자동차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 등기 검험, 유지보수, 소비자신고, 리콜 등 정보 공유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7조** 제품품질 감독부문과 유관부문, 기구 및 기타 업무인원은 본 조례에 규정된 직책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기밀 및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생산자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결함 자동차제품을 모두 리콜 해야한다. 생산자가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리콜 명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칭하는 생산자는 중국 경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자동차제품을 생산 및 그 명의로 제품합격증을 교부한 기업을 가리킨다. 중국 경외에서 자동차제품을 경내로 수입하여 판매한 기업은 전 관(款)에서 칭한 생산자로 간주한다. **제9조** 생산자는 자동차제품의 설계, 제조, 표지, 검험 등의 정보와 자동차제품을 최초 판매한 차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10년 이상이다.**제10조** 생산자는 아래 정보를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1) 생산자 기본정보(2) 자동차제품의 기술 변수 및 자동차제품을 최초 판매한 차주에 대한 정보 (3) 자동차제품에 생명, 자산 안전을 위협하는 고장의 원인으로 발생한 수리, 교환, 반품에 대한 정보(4) 자동차제품이 중국 경외에서 리콜을 실시한 정보(5)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비안을 요구하는 기타 정보**제11조** 자동차제품을 판매, 임대, 유지보수 하는 경영자(이하 "경영자")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품의 유관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5년 이상이다. 경영자가 자동차제품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결함 자동차제품의 판매, 임대,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생산자는 리콜 실시하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 경영자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보고하고, 생산자에게 자동차제품의 결함 가능성에 관한 유관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생산자가 자동차제품의 결합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단을 조직하여 분석하고,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사실대로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생산자가 자동차제품의 결함을 확인한 경우, 즉시 결함 자동차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을 중지해야 하며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자동차제품의 결함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생산자에게 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것을 통보한다. 생산자가 통지에 따라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결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자동차제품이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결함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산자, 경영자의 생산경영장소에서 현장조사, 검열 및 유관 자료와 기록을 카피할 수 있으며, 유관 단위와 개인에게 자동차제품 결함 가능성의 정황을 알린다. 생산자는 결함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유관 자료, 제품 및 전용설비를 제공한다. 경영자는 결함조사에 협조하여 조사에 필요한 유관 자료를 제공한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생산자, 경영자가 제공한 자료, 제품 및 전용설비가 조사에 필요한 기술검사와 감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조사를 통해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리콜 실시를 통지해야 한다. 생산자가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업무일 이내에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생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생산자가 본 통지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본 조항 2항의 규정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분이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논증, 기술검측, 감정하여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을 경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생산자에게 리콜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 생산자는 반드시 결함이 있는 자동차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을 정지하고 리콜을 실기해야 한다. **제16조** 생산자가 리콜을 실시하면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 규정에 따라 리콜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비안한다. 이미 비안한 리콜계획을 수정할 경우 다시 비안을 해야 한다. 생산자는 리콜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제17조** 생산자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비안한 리콜계획을 판매자에게 동시에 통보해야 하며, 판매자는 결함 자동차제품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제18조** 생산자가 리콜을 실시하면 대중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공포해야 하며, 차주에게 자동차제품의 결함, 피해 방지의 응급처치방법 및 생산자가 결함을 제거하는 조치 등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적시에 기확인된 결함 자동차제품 정보와 생산자가 실시하는 리콜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포해야 한다. 차주는 생산자가 실시하는 리콜에 협조해야 한다. **제19조** 리콜을 실시하는 결함 자동차제품에 대해서 생산자는 적시에 수정 또는 보완한 표지, 수리, 변경, 반품 등 조치를 취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한다. 생산자는 결함을 제거하는 비용 및 결함 자동차제품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생산자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의 규정에 따라 리콜 관련 경과보고와 총 결과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리콜 실시 현황에 대하여 감독을 해야 하며, 생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생산자가 결함을 제거한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한다. **제22조** 생산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상황 가운데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에 따라 유관 자동차제품 및 차주의 정보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2) 규정에 따라 유관 정보, 리콜계획을 비안하지 않은 경우(3) 규정에 따라 유관 리콜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23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상황 가운데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허가기관은 유관 허가를 말소시킨다. (1) 생산자, 경영자가 제품품질 감독부문의 결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2) 생산자가 기비안한 리콜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3) 생산자가 리콜계획을 판매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제24조** 생산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상황 가운데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시정 명령을 하고, 결함 자동차제품 가격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허가기관은 유관 허가를 말소시킨다. (1) 결함이 있는 자동차제품의 생산, 판매 혹은 수입을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2) 결함이 있음을 감출 경우(3) 리콜을 명 받았으나 리콜하지 않을 경우**제25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감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아래 행위 가운데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1) 생산자, 경영자가 제공하는 자료, 제품 및 전용설비를 결함 조사에 필요한 기술검사uan와 감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당사자의 상업기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3) 기타 직무유기, 불법행위, 직권남용의 행위를 한 경우**제26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27조** 자동차제품 출고 시, 차량에 설치되지 않은 타이어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타이어 생산자가 리콜을 책임진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본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다. **제28조** 생산자는 본 조례에 따라 결함 자동차제품을 리콜하며, 법에 의거하여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제품에 본 조례에 규정된 결함 이외의 품질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차주는 제품 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유관규정 및 계약약정에 근거하여 생산자, 판매자에게 수리, 교환, 반품을 책임지도록 하여 배상손실 등 그에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본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条例**国务院令第626号 　　《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条例》已经2012年10月10日国务院第219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3年1月1日起施行。 　　　　　　　　　　　　　　　　　　　　　　　　　 　　 总理 温家宝 　　　　　　　　　　　　　　　　　　　　　　　　　　　 　 2012年10月22日 　**第一条**　为了规范缺陷汽车产品召回，加强监督管理，保障人身、财产安全，制定本条例。 　 **第二条**　在中国境内生产、销售的汽车和汽车挂车（以下统称汽车产品）的召回及其监督管理，适用本条例。 　 **第三条**　本条例所称缺陷，是指由于设计、制造、标识等原因导致的在同一批次、型号或者类别的汽车产品中普遍存在的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情形或者其他危及人身、财产安全的不合理的危险。 　 本条例所称召回，是指汽车产品生产者对其已售出的汽车产品采取措施消除缺陷的活动。 　 **第四条**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负责全国缺陷汽车产品召回的监督管理工作。 　 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缺陷汽车产品召回的相关监督管理工作。 　 **第五条**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根据工作需要，可以委托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产品质量监督部门、进出口商品检验机构负责缺陷汽车产品召回监督管理的部分工作。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缺陷产品召回技术机构按照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的规定，承担缺陷汽车产品召回的具体技术工作。 　 **第六条**　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产品质量监督部门投诉汽车产品可能存在的缺陷，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以便于公众知晓的方式向社会公布受理投诉的电话、电子邮箱和通信地址。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建立缺陷汽车产品召回信息管理系统，收集汇总、分析处理有关缺陷汽车产品信息。 　 产品质量监督部门、汽车产品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海关、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交通运输主管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等有关部门应当建立汽车产品的生产、销售、进口、登记检验、维修、消费者投诉、召回等信息的共享机制。 　 **第七条**　产品质量监督部门和有关部门、机构及其工作人员对履行本条例规定职责所知悉的商业秘密和个人信息，不得泄露。 　 **第八条**　对缺陷汽车产品，生产者应当依照本条例全部召回；生产者未实施召回的，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依照本条例责令其召回。 　 本条例所称生产者，是指在中国境内依法设立的生产汽车产品并以其名义颁发产品合格证的企业。 　 从中国境外进口汽车产品到境内销售的企业，视为前款所称的生产者。 　 **第九条**　生产者应当建立并保存汽车产品设计、制造、标识、检验等方面的信息记录以及汽车产品初次销售的车主信息记录，保存期不得少于10年。 　 **第十条**　生产者应当将下列信息报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备案： 　 （一）生产者基本信息； 　 （二）汽车产品技术参数和汽车产品初次销售的车主信息； 　 （三）因汽车产品存在危及人身、财产安全的故障而发生修理、更换、退货的信息； 　 （四）汽车产品在中国境外实施召回的信息； 　 （五）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要求备案的其他信息。 　 **第十一条**　销售、租赁、维修汽车产品的经营者（以下统称经营者）应当按照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的规定建立并保存汽车产品相关信息记录，保存期不得少于5年。 　 经营者获知汽车产品存在缺陷的，应当立即停止销售、租赁、使用缺陷汽车产品，并协助生产者实施召回。 　 经营者应当向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报告和向生产者通报所获知的汽车产品可能存在缺陷的相关信息。 　 **第十二条**　生产者获知汽车产品可能存在缺陷的，应当立即组织调查分析，并如实向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报告调查分析结果。 　 生产者确认汽车产品存在缺陷的，应当立即停止生产、销售、进口缺陷汽车产品，并实施召回。 　 **第十三条**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获知汽车产品可能存在缺陷的，应当立即通知生产者开展调查分析；生产者未按照通知开展调查分析的，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开展缺陷调查。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认为汽车产品可能存在会造成严重后果的缺陷的，可以直接开展缺陷调查。 　 **第十四条**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开展缺陷调查，可以进入生产者、经营者的生产经营场所进行现场调查，查阅、复制相关资料和记录，向相关单位和个人了解汽车产品可能存在缺陷的情况。 　 生产者应当配合缺陷调查，提供调查需要的有关资料、产品和专用设备。经营者应当配合缺陷调查，提供调查需要的有关资料。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不得将生产者、经营者提供的资料、产品和专用设备用于缺陷调查所需的技术检测和鉴定以外的用途。 　 **第十五条**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调查认为汽车产品存在缺陷的，应当通知生产者实施召回。 　 生产者认为其汽车产品不存在缺陷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15个工作日内向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提出异议，并提供证明材料。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组织与生产者无利害关系的专家对证明材料进行论证，必要时对汽车产品进行技术检测或者鉴定。 　 生产者既不按照通知实施召回又不在本条第二款规定期限内提出异议的，或者经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依照本条第二款规定组织论证、技术检测、鉴定确认汽车产品存在缺陷的，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责令生产者实施召回；生产者应当立即停止生产、销售、进口缺陷汽车产品，并实施召回。 　 **第十六条**　生产者实施召回，应当按照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的规定制定召回计划，并报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备案。修改已备案的召回计划应当重新备案。 　 生产者应当按照召回计划实施召回。 　 **第十七条**　生产者应当将报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备案的召回计划同时通报销售者，销售者应当停止销售缺陷汽车产品。 　 **第十八条**　生产者实施召回，应当以便于公众知晓的方式发布信息，告知车主汽车产品存在的缺陷、避免损害发生的应急处置方法和生产者消除缺陷的措施等事项。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及时向社会公布已经确认的缺陷汽车产品信息以及生产者实施召回的相关信息。 　 车主应当配合生产者实施召回。 　 **第十九条**　对实施召回的缺陷汽车产品，生产者应当及时采取修正或者补充标识、修理、更换、退货等措施消除缺陷。 　 生产者应当承担消除缺陷的费用和必要的运送缺陷汽车产品的费用。 　 **第二十条**　生产者应当按照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的规定提交召回阶段性报告和召回总结报告。 　 **第二十一条**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对召回实施情况进行监督，并组织与生产者无利害关系的专家对生产者消除缺陷的效果进行评估。 　 **第二十二条**　生产者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产品质量监督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规定保存有关汽车产品、车主的信息记录； 　 （二）未按照规定备案有关信息、召回计划； 　 （三）未按照规定提交有关召回报告。 　 **第二十三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产品质量监督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由许可机关吊销有关许可： 　 （一）生产者、经营者不配合产品质量监督部门缺陷调查； 　 （二）生产者未按照已备案的召回计划实施召回； 　 （三）生产者未将召回计划通报销售者。 　 **第二十四条**　生产者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产品质量监督部门责令改正，处缺陷汽车产品货值金额1%以上10%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由许可机关吊销有关许可： 　 （一）未停止生产、销售或者进口缺陷汽车产品； 　 （二）隐瞒缺陷情况； 　 （三）经责令召回拒不召回。 　 **第二十五条**　违反本条例规定，从事缺陷汽车产品召回监督管理工作的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 　 （一）将生产者、经营者提供的资料、产品和专用设备用于缺陷调查所需的技术检测和鉴定以外的用途； 　 （二）泄露当事人商业秘密或者个人信息； 　 （三）其他玩忽职守、徇私舞弊、滥用职权行为。 　 **第二十六条**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七条**　汽车产品出厂时未随车装备的轮胎存在缺陷的，由轮胎的生产者负责召回。具体办法由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参照本条例制定。 　 **第二十八条**　生产者依照本条例召回缺陷汽车产品，不免除其依法应当承担的责任。 　 汽车产品存在本条例规定的缺陷以外的质量问题的，车主有权依照产品质量法、消费者权益保护法等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以及合同约定，要求生产者、销售者承担修理、更换、退货、赔偿损失等相应的法律责任。 　 **第二十九条**　本条例自2013年1月1日起施行。 |